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	--

제출연월일 : 2002. 6. .
제 출 자 : 이 천 시 장

□ 개정이유

- 읍·면·동 기능전환에 따라 설치되는 주민자치센터의 효율적 운영과 자치활동 프로그램의 활성화, 주민자치위원회 구성개선 및 자율성 확대와 공직선거 및 선거부정방지법 개정에 따른 자치법규의 보완임

□ 주요골자

【주민자치센터 관련】

- 주민자치센터의 명칭을 “000읍(면·동)주민자치센터”로 통일(안 제4조)
- 지역사회진흥 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의 우선적 수행(안 제5조)
- 주민자치센터운영 사무를 소속공무원, 위원, 자원봉사자 등이 분담 수행(안 제7조)
-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시장은 필요한 예산을 지원(안 제7조)
- 사용료는 읍·면·동장이, 수강료는 위원회에서 징수요율, 감면, 징수, 관리, 집행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
- 이용자 및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를 대비하여 시설보험 가입(안 제11조)

【주민자치위원회 관련】

- 위원회의 일부 의결·집행기능 부여(안 제15조)
- 시의원의 당연직 고문제도 도입(안 제17조)
- 각급 기관·단체에서 추천하는 자 및 공개모집에 의한 위원 위촉(안 제17조)
- 각 분야별 균형 있는(분야별 1/3이상 초과 금지) 위원 위촉(안 제17조)
- 위원의 임기를 1년으로 단축하며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이 가능하도록 하고, 위원의 주요인적사항을 지역주민에게 공개(안 제17조)
- 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주민자치센터 자원봉사활동 참여 의무화(안 제18조)
- 고문을 포함 해촉요건 강화 및 해촉시 위원회 심의를 받도록 함(안 제20조)
- 위원회의 회의소집 권한 위원장에게 부여(안 제21조)
- 고문 및 읍·면·동장은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함(안 제21조)

이천시조례 제 호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이천시주민자치센터설치및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조중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을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에 의거”로 한다.

제2조중 “다음과 같다”를 “다음 각 호와 같다”로 하고, 동조제2호중 “각종 직능·자생단체”를 “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로 한다.

제4조제2항중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 정한다”를 ““○○읍·면·동주민자치센터”로 한다”로 한다.

제5조제1항을 다음과 같이 한다

①자치센터는 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

1. 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활동 등 주민자치기능
2. 지역문화 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기능
3. 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
4.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기능
5.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 교육기능
6. 내집 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 등 지역사회진흥기능

제5조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③제2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제1항의 제1호 또는 제6호와 관련된 기능은 우선적으로 갖추어 수행할 수 있다.

제6조제2항중 “시설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요구한 시설 등을 우선으로 하되”를 “시설 등의 종류와 내용, 그 변경 등은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읍·면·동장이 정하되,”로 하고, “시장이”를 “필요한 경우에는 시장이”로 하며, 동조제4항중 “계획을”을 “설치 계획을”로 한다.

제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7조(운영방법) ①자치센터의 시설 및 프로그램 운영(이하 '자치센터의 운영'이라 한다)은 읍·면·동장이 한다.

②읍·면·동장은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소속공무원,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로 하여금 자치센터 운영에 관한 사무를 전담 또는 분담하여 수행하게 할 수 있다.

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 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 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

④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 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 등을 지원할 수 있다.

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제10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

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 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

③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징수 요율등의 결정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

④읍·면·동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비율 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

⑤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⑥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 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

제11조제3항중 “시설 등의”를 “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로 하고, 동조에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⑤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 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

제14조제1항중 “1월전까지”를 “3월전까지”로 하고, 동조제2항중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을 “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으로 하며, “심의를 거쳐”를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 후 20일 이내에”로 한다.

제15조중 “심의하기 위하여”를 “심의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로 한다.

제16조제1항제5호 및 제6호를 다음과 같이 하고, 제7호 및 제8호를 삭제한다

5. 지역개발 및 자조사업에 관한 사항
6. 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제16조에 제2항 및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7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둘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에 있는 동안 당연직 고문이 될 수 있다.

②읍·면·동장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 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 또는 단체의 대표자로서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추천 또는 선출된 후보자 중 봉사정신이 투철하거나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전문지식을 갖춘 자를 위원으로 위촉하여야 한다.

1. 당해 읍·면·동에 소재한 각급 학교, 통·리장대표, 주민자치위원회 및 교육·언론·문화·예술 기타 시민·사회단체에서 추천하는 후보자

2. 공개모집 방법에 의하여 선출된 후보자

③읍·면·동장은 제2항에 의한 위원을 위촉함에 있어서 교육계, 언론계, 문화·예술계, 관계, 경제계, 일반 주민 등 각계 각층이 균형 있게 참여할 수 있도록 위촉하되, 어느 한 계층에 소속된 위원이 전체 위원의 1/3을 초과해서는 아니 되며, 특히

여성위원의 참여를 적극 장려하여 전체위원의 1/3 이상이 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 ④위원장과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하되 위원장은 공무원이 아닌 자 중에서 선출하여야 한다.
- ⑤고문은 읍·면·동장이 위촉하되, 당연직이 아닌 고문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관할구역 내에 거주하거나 사업장에 종사하는 자로서 전문적 식견을 갖추었거나 덕망이 높은 자를 위촉한다.
- ⑥읍·면·동장은 고문을 포함한 위원전원에 대한 주요 인적사항을 매년도 개시 1월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하며, 고문을 포함한 위원을 새로이 위촉한 경우에도 주요 인적사항을 같은 방법에 의해 즉시 일반 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
- ⑦위원장,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

제18조에 제3항 및 제4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③고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 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 내용 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

제20조제1항중 “위원이”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로 하고, “해촉할 수 있다”를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고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로 하며, 동항제3호중 “위원 스스로”를 “스스로”로 하고, 동항제4호를 제5호로 하되, “기타 위원으로서”를 “기타 위원이나 고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로 하며, 동항제3호 다음에 제4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하고, 동조제2항중 “위원의 임기”를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고문의 임기”으로 한다.

4. 자치센터의 운영취지, 목적, 기능 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

제21조제2항을 제3항으로 하고, 제2항·제4항 및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 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
- ④고문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
- ⑤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 할 수 있다.

제22조중 “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은”을 “간사는”으로 한다.

제23조중 “위원은”을 “고문을 포함한 위원은”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소관실·과·소		주민지원과
입 안 자	실·과·소장 직위·성명	주민지원과장 박 광 일
	담당·팀장 직위·성명	주민지원담당 김 만 식
	담 당 자 성명·전화	곽 영 홍 644-2373

신·구조문대비표

현행	개정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지방자치법 제8조에 의한 주민편의 및 복리증진을 도모하고 주민자치 기능을 강화하여 지역공동체 형성에 기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두는 주민자치센터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과 주민자치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p> <p>1. "주민자치센터"란 제1조의 목적을 위해 주민이 이용할 수 있도록 읍·면·동사무소에 설치된 각종 문화·복지·편익시설과 프로그램을 총칭한다.</p> <p>2. "단체"란 관할구역 내에 있는 비영리 목적의 각종 직능·자생단체, 취미·동호회등의 주민 조직을 말한다.</p> <p>제4조(설치등) ①(생략)</p> <p>②자치센터의 명칭은 당해 읍·면·동사무소의 읍·면·동장 및 주민자치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시장이정한다.</p> <p>제5조(기능) ①자치센터는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 및 주민자치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p> <p>1. 지역문화 행사, 취미교실, 생활체육등 문화여가 기능</p> <p>2. 평생교육, 교양강좌, 청소년교실 등 시민 교육 기능</p> <p>3. 회의장, 알뜰매장, 생활정보제공 등 주민편익 기능</p> <p>4. 내집앞 청소하기, 불우이웃돕기, 청소년지도등 지역사회진흥기능</p> <p>5. 지역문제에 대한 토론, 건의 등 주민자치 기능</p> <p><신설></p>	<p>제1조(목적) — 지방자치법 제8조 및 동법시행령 제8조에 의거 —————</p> <p>제2조(정의) —————</p> <p>다음 각 호와 같다.</p> <p>1.(현행과 같음)</p> <p>2. —————</p> <p>---각종 민간단체, 직능·자생단체-----</p> <p>제4조(설치등) ①(현행과 같음)</p> <p>②----- "○○읍·면·동주민자치센터"로 한다</p> <p>제5조(기능) ①-----주민자치기능 및 주민을 위한 문화·복지·편익기능을 수행하며 그 기능을 예시하면 다음 각 호와 같다.</p> <p>1.지역문제 토론, 마을환경가꾸기, 자율방재 활동 등 주민자치기능</p> <p>2.지역문화행사, 전시회, 생활체육 등 문화여가 기능</p> <p>3.건강증진, 마을문고, 청소년공부방 등 지역복지기능</p> <p>4.(현행 제3호와 같음)</p> <p>5.(현행 제2호와 같음)</p> <p>6.(현행 제4호와 같음)</p>

현행	개정
<p><신설></p> <p>③시장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읍·면·동장과 주민자치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자치센터의 운영을 공무원이 아닌 자 또는 단체에 위탁할 수 있다.</p> <p><신설></p> <p>제10조(사용료등) ①자치센터의 시설 등은 무상이용을 원칙으로 하되, 읍·면·동장은 이용자로부터 사용료, 수강료, 회비 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에 관한 사항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정한다.</p> <p>③사용료 등의 징수범위와 요율 등은 수익자 부담원칙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여야 한다.</p>	<p>③위원회는 제2항에 의해 지정된 자중 소속공무원을 제외한 위원회의 위원 또는 자원봉사자에게는 업무량과 근무시간 등을 감안하여 제10조 제6항의 규정에 의해 "수강료" 징수액중 일정금액을 봉사활동비로 지급할 수 있다.</p> <p>④-----위원회-----</p> <p>-----위탁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시장은 자치센터운영을 수탁한 자나 단체에 대해 사업비등을 지원할 수 있다.</p> <p>⑤시장은 자치센터의 건전한 운영과 발전을 위해 운영비 등 필요한 예산을 적극적으로 지원하되, 제10조에 의하여 징수 가능한 "수강료"의 수입 총액을 감안하여 적정 수준의 예산을 지원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p> <p>제10조(사용료등)①-----이용자로부터 사용료,수강료등(이하 "사용료 등"이라 한다)을 징수할 수 있다.</p> <p>②제1항 중 "사용료"는 자치센터의 시설·장비등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읍·면·동장이 징수하며, "수강료"는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경우로서 위원회에서 징수한다.</p> <p>③사용료 등의 징수 범위와 징수 요율등의 결정은 수익자 부담원칙에 따라 공공성을 고려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사용료"의 경우는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 읍·면·동장이 정하며, "수강료"의 경우는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위원회가 정한다.</p>

현행	개정
<p><신설></p> <p><신설></p> <p><신설></p> <p>제11조(이용등) ①주민은 자치센터의 시설등을 이용할 수 있다.</p> <p>②자치센터의 시설 등을 이용함에 있어 주민은 선량한 이용자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p> <p>③주민은 제10조 규정에 의한 시설 등의 이용에 대하여는 사용료 등을 납부할 의무를 진다.</p> <p>④읍·면·동장은 주민이 그 의무를 다 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시설의 회복을 위해 변상 또는 이용제한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p> <p><신설></p>	<p>④읍·면·동장은 제11조제3항에 의한 이용자가 저소득자 등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3항에 의한 사용료 등을 감면할 수 있으며, 그 기준과 감면 비율 등은 위원회와 협의하여 정한다.</p> <p>⑤제2항에 의하여 위원회가 징수한 “수강료”에 대해서는 위원회가 읍·면·동장과 협의하여 자치센터의 운영에 필요한 경비로 사용하여야 하며, 그 수입·지출내역을 반기별로 반기경과 후 20일 이내에 공고·게시 등의 방법에 의해 일반주민에게 공개하여야 한다.</p> <p>⑥읍·면·동장은 “사용료”의 징수·관리등을 위하여 소속공무원 중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위원회는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을 위하여 위원회에서 회계책임자를 지정하되, “수강료”의 징수·관리·지출 등은 위원회 명의로 한다.</p> <p>제11조(이용등)①~② (현행과 같음)</p> <p>③-----사용료 등의 징수대상 시설 등의-----</p> <p>④ (현행과 같음)</p> <p>⑤읍·면·동장은 자치센터의 시설·장비의 노후 및 하자 등으로 이용자 또는 자원봉사자가 신체상의 피해를 입는 경우에 대비하여 시설보험 등에 가입할 수 있다.</p>

(제55회 -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현	행	개	정
제14조(보고)①읍·면·동장은 매년 회계년도 개시 1월전까지 자치센터의 연간운영계획을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수입과 지출내역을 포함한 운영결과 보고서를 반기별로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14조(보고) ① ----- --3월전까지 ----- -----	②--제10조에 의한 사용료 등 자치센터 운영에 따른 ----- -----심의를 거쳐 당해 반기 경과후 20일 이 내에 -----.
제15조(설치)읍·면·동사무소의 자치센터의 운영등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읍·면·동사무소에 주민자치위원회를 둔다.		제15조(설치) ----- ----- 심의 하거나 결정하기 위하여-- -----.	
제16조(기능)①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심의한다.	1.자치센터의 시설 등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사항 2.주민의 문화·복지·편익증진에 관한 사항 3.주민의 자치활동 강화에 관한 사항 4.지역공동체 형성에 관한 사항 5.지역개발에 관한 사항 6.각종 주민단체의 연락, 조정, 지도에 관한 사항 7.자조사업 또는 공동 이익사업에 관한 사항 8.기타 자치센터의 운영 등에 관하여 필요할 사항	제16조(기능) ①(현행과 같음) 1.~4.(현행과 같음) 5.지역개발 및 자조사업에 관한 사항 6.기타 자치센터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 7.<삭 제> 8.<삭 제>	②제1항의 규정에 불구하고 이 조례에서 위원회가 결정하도록 규정한 사항은 위원회에서 의결로서 결정한다. ③위원회는 제21조에 의한 정기회의 개최시 제5조제1항 제1호 또는 제6호의 기능 수행과 관련된 안건을 심의하고 토론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신 설> <신 설>			
제17조(구성등) ①위원은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하여 15인 이상 25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17조(구성등) ① ----- -----25인 이내로 구성하되, 3인 이내의 고문을 별도로 들수 있으며, 이 경우 당해 읍·면·동에서 선출된 시의회 의원은 그 직 에 있는 동안 당연직고문이 될 수 있다.	

(제55회 - 제3차 자치행정위원회)

현행	개정
<p>⑤위원장, 부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다만, 보궐로 선임된 위원장 및 부위원장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 기간으로 한다.</p> <p>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직무를 통할 한다. ②부위원장은 위원장을 보좌하며 위원장의 유고시 그 직무를 대행한다.</p> <p><신설></p> <p><신설></p> <p>제20조(해촉) ①읍·면·동장은 위원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임기 전이라도 해촉할 수 있다.</p> <p>1 ~ 2. (생략)</p> <p>3.위원 스스로 사퇴를 원하는 경우</p> <p><신설></p> <p>4. 기타 위원으로서 직무를 수행하기가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p> <p>②제1항에 의한 해촉 후 그 후임자로 위촉된 위원의 임기는 전임자의 잔임기간으로 한다.</p>	<p>⑦- 부위원장,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교문의 임기는 1년으로 --. 다만, 위원장은 1회에 한하여 연임할 수 있다.</p> <p>제18조(위원장의 직무등) ①~②(현행과 같음)</p> <p>③교문은 자치센터의 원활한 운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자문·조언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p> <p>④위원은 매월 소정의 시간을 자치센터 운영을 위한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하며, 월별 각 위원의 근무 일자, 근무시간, 자원봉사내용등은 위원회에서 정한다</p> <p>제20조(해촉) ①-----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교문이----- -----해촉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는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다만, 당연직 교문의 경우에는 제4호 내지 제5호의 경우에 한하여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해촉할 수 있다.</p> <p>1 ~ 2. (현행과 같음)</p> <p>3.스스로 -----</p> <p>4.자치센터의 운영취지,목적,기능등에 반하는 행위를 하였을 경우.</p> <p>5.기타 위원이나 교문으로서 직무를 해태 하였거나 -----.</p> <p>② -----위원 및 당연직이 아닌 교문의 임기는-----.</p>

현행	개정
<p>제21조(회의) ①위원회의 회의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로 구분하며 정기회의는 월1회 개최하고 임시회의는 위원장 또는 읍·면·동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와 위원 1/3이상의 요구가 있을 때 개최 할 수 있다.</p> <p><신 설></p> <p>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의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의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p> <p><신 설 ></p> <p><신 설></p> <p>제22조(회의록) 위원회의 <u>간사 또는 지정된 공무원</u>은 회의시 마다 회의록을 작성하여 비치하여야 한다.</p> <p>제23조(실비보상등) <u>위원은</u>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에는 예산의 범위 내에서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p>	<p>제21조(회의) ①(현행과 같음)</p> <p>②제1항에 의한 위원회의 회의개최 통지는 위원장 명의로 한다.</p> <p>③(현행 제2항과 같음)</p> <p>④고무은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으나, 표결권은 갖지 아니한다.</p> <p>⑤읍·면·동장은 자치센터 운영과 관련하여 위원회 회의에 참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p> <p>제22조(회의록) ----- 간사는 ----- ----- -----</p> <p>제23조(실비보상등) <u>고무를 포함한 위원은</u>----- ----- -----</p>